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1. 19

관광건설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2월 28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183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2001. 1. 17)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윤)

가. 제안이유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근거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근거 규정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을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으로

○ 과징금 납부통지 규정 폐지

-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징금 납부통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

○ 기타 일부 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근거규정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제2조 내지 5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제1항중 “납부통지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4조제1항----- -----
제2조(과징금 납부통지)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중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①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과징금 처분대장) 〈생략〉	제3조(과징금 처분대장) 〈현행과 같음〉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생략〉	제4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등)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규칙) 〈생략〉	제5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체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이하“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